

## 2002년에 개정된 식품영업관련 규정

정부는 지난해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영업관련 법령 및 각종 고시를 수 차례 제·개정하였으며 식품 영업자는 이러한 각종 규정의 변경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이에 본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 2002년도에 제·개정된 식품영업 관련 규정의 변동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자료정리 : 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부 유봉준 과장)

### 보건복지부

#### 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기관지정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9호, 2002. 1)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실시기관으로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자중 제과점영업자는 (사)대한제과협회에서, 동법시행령 제7조제5호나목(5)의 규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및 동업종의 영업자중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는 (사)한국식품자동판매기업중앙회로 지정· 고시(시행일 : 2002. 2. 1)

#### 식품위생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6724호, 2002. 8. 26)

가. 식품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에 사용되는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수입 또는 개발·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식품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 법에 적합하다고 사전에 확인하여 고시한 수입 식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식품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영업허가의 제한이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출입·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업자가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용자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금액을 종전의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사. 위해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자 또는 무허가 영업자 등에 대하여 징역형을 5년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법률 제6727호, 2002. 8. 26)

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의함.

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다.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마.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 제품 및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도록 함.

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허위 표시 및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

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허위 또는 과대 표시·광고를 한 자, 기준·규격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을 제조·판매한 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  
 게 하여 판매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함.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식약청고시 제 2002-1호, 2002. 1. 4)

농산물의 잠정기준 적용일부를 개정하고 농산물의 형태및 농약의 잔류특성 등에  
 따라 농산물을 분류하였으며 또한 분류에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농약이 검출된 농  
 산물은 우리나라 농약 잔류허용기준에서 해당 농약 잔류기준중 유사한 농산물의 최  
 저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제3.3의 1,2항에 적용 되지 아니한 경우, 검출된 농약은 우  
 리나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시행일: 2002. 4. 1)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식약청고시 제2002-22호, 2002. 5. 4)

- 가. 동물용의약품 11종에 대하여 부위별로 세분화하여 개정하였음.
  - 나. 식육, 유 및 유제품, 알의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 26종  
 을 신설
  - 다. 어류 및 갑각류 중 뱀장어에 대하여 옥솔린산의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신설
  - 라. 유(乳)의 합성항균제 5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 마. 기준 제·개정에 따라 시험방법을 개정 및 신설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육중의 잔류허용기준 및 알의 잔류허  
 용기준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유의 잔류허용기준개정규정은 2003  
 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식약청고시 제2002-24호, 2002. 5. 24)

- 가. 글루코사민(염류포함)을 건강보조식품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함.
- 나. 식이섬유원료에 차전자피,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결정셀룰로오스, 리그닌, 펙틴, 알긴산, 폴리만뉴로닉산, 구아검, 아라비아검, 아라비노갈락탄, 곤약만난, 이눌린, 레반, 폴리텍스트로스, 난소화성말토텍스트린 등이 포함됨을 명시함.
- 다. 칼슘원료를 불가사리껍질, 기타식품원료, 식품첨가물공전에 수재되어 있는 것으로 추가·확대함.
- 라. 식품일반규격에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 잠정허용기준신설
  - 산분해간장, 혼합간장(산분해 또는 산분해간장 원액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에 대하여 0.3ppm 이하로 규정
  - 식물성단백 가수분해물은 건조물로서 1.0 ppm 이하로 규정
- 마. 보존 및 유통기준 중 냉장제품은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추가함.
- 바. 당류에서 설탕의 식품유형 중 덩어리설탕 신설함.
- 사. 백설탕, 분말설탕,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의 납 규격 강화함.
  - 백설탕, 분말설탕은 1.0ppm에서 0.5ppm 이하로,
  -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는 2.0 ppm에서 1.0 ppm 이하로 강화
- 아. 다류의 납 규격을 강화
  - 침출차를 제외한 품목은 중금속으로 5.0ppm 이하를 납으로 2.0ppm 이하로 강화(침출차는 납으로 5.0 ppm 이하)
- 자. 옥타코사놀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사탕수수, 사과과피, 포도과피 등 식용식물로 확대함.
- 차. 키토산가공식품에 키토산분말, 글루코사민분말, 글루코사민가공식품의 유형신설
- 카. 간장의 한식간장을 재래한식간장과 개량한식간장으로 유형 세분화
- 타. 건포류 중 조미건어포류의 성분규격 중 대장균균을 대장균으로 변경함.
- 파. 개량메주의 정의를 원료를 증자한 후 선별된 종균을 이용하여 발효시킨 것으로 명확하게 명시함.
- 하. 수산물에 대한 잠정규격 중 복어독의 성분규격 및 시험법 신설  
(이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고시전에 제조·가공·수입된 식품의기준및규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적용을 받음)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식약청고시 제2002-33호, 2002. 6. 25)

- 가.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의 HACCP 적용기준 신설
- 나. 영업자가 스스로 마련한 HACCP 적용기준의 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
- 다.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HACCP 지도관에 관한 규정 신설

식품등의표시기준중개정  
(식약청고시 제2002-49호, 2002. 8. 27)

- 가. 제조연월일의 산출시점 기준을 당해 제품의 최종 포장직전까지 더 이상의 제조·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제2조제3호).
- 나. 주표시면 및 일정장소에 일괄표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과 활자크기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제5조).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의 크기(포인트)	비 고
주표시면	○제품명	6	
	○제품의 유형	12	
	○내용량	12	
일괄표시	○제조연월일	7	
	○유통기한	7	
	○원재료명 및 함량	7	
	○성분명 및 함량	7	
기 타	○업소명 및 소재지	6	
	○영양성분	6	
	○기타	6	

- 다. 수입식품 및 식품첨가물중 자사제품제조용원료에 대하여 제품명, 제조업소명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들 제품이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라. 수입식품중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함에 있어 외국어의 제품명을 한글로 번역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글로 번역하여 제품명을 표시하는 때에는 외국어의 제품명과 병기하도록 함(별지 1제1호가목).
- 마.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식품유형 표시사항을 한 곳으로 합하여 규정 하였으며, 업소명 및 소재지의 표시기준을 명확히 규정함(별지 1제1호가목).  
다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등 식품유형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식품에 대하여 식품별 개별기준에서 재 규정된 사항을 삭제함
- 바. 통·병조립을 구분표시하도록 하는 사항과 수산물통(병)조립식품을 구분 표시 하도록 하는 규정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현행 식품공전상에도 삭제된 규정이므로 의무표시규정을 삭제함(별지 1제1호가목).
- 사. 식품첨가물중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는 합성감미료는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을, 합성착색료는 식용색소청색 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 제102호알루미늄레이크 및 동클로로필을, 합성보존료는 안식향산칼륨 및 안식향산칼슘을 추가함(별지 1 제1호가목).
- 아.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와 관련한 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개정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동법을 인용한 관련규정을 정리함(별지 1제1호가목).
- 자.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원터치캔의 개봉시 주의안내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별지 1제1호가목).
- 차. 식품공전이 개정되어 전분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있어서 내수성과 비내수성의 기준·규격이 서로 다름에 따라 비내수성은 비내수성 전분제로 표시하도록 함(별지 1 제2호다목).
- 카. 면류의 전제품에 대하여 살균여부 등에 따라 “살균제품”, “주정침지제품” 또는 “비살균제품”으로 구분표시 하도록 규정을 생면류 및 숙면류에만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완화함(별지 1제2호).
- 타. 미삼류와 인삼근류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인삼류는 농축인삼류, 인삼분말류, 농축홍삼류 및 홍삼분말류 등 100% 인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제품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함(별지 1제2호).
- 파. 식품공전의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리하고, 한국인 1인 영양권장량에 대하여 2000년도 7차 개정사항으로 변경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2003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기준및규격중개정  
(식약청고시 제2002-51호, 2002. 9. 9)

-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4.품목별 규격 및 기준의 가.화학적합성품중 403. 스테아린산 칼슘 및 나.천연첨가물중 183.판크레아틴, 184.페룰린산 및 185.피마자유를 신규 지정함.
  - 나. 식품첨가물공전 제2. 제조기준 혼합제제중 4.를 개정하고, 제3.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중 ㉞을 신설함.
  - 다.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의 가.화학적합성품중 10. 고급케톤류 등 31품목의 성분규격 또는 사용기준을 개정함.
  - 라.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의 나.천연첨가물중 20.리파아제등 16 품목의 성분규격 또는 사용 기준을 개정함.
- (시행일 : 2002. 9. 9)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고시  
(식약청고시 제2002 - 53호, 2002. 9. 30)

식품원료 중 주원료로 사용가능한 28종과 부원료로 사용가능한 9종을 추가로 확대 하였으며, 특수영양식품중 기타 영·유아식의 정의 및 나트륨 규격을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비타민류 시험법중 비타민 B6의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시험법을 신설 했다.

(시행일 : 2002. 9. 30)

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고시  
(식약청고시 제2002 - 63호, 2002. 11. 29)

- 제2. 3. 1) 중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를 “제5조에서”로 한다
- 제3. 1. 28) (1) ㉞ 중 “오가피”를 “오갈피나무(오가피, 열매, 잎)”로 한다.
- 제3. 1. 28) (2) ㉞ 중 “악어고기”를 추가한다.
- 제3. 2. 1) (7) ㉞ b 중 “가능한 5종류 이하만 혼합가능하며”를 삭제한다.
- 제3. 2. 1) (7) ㉞ 중 “수국차(감차, 감로차)”를 “수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품목명 (이명 또는 영명)	학 명	사 용 부 위
수 국	<i>Hydrangea serrata</i> SERINGE	잎

제3. 2. 1) (7) ② 중 녹각 및 녹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녹용각을 삭제한다.

품목명 (이명 또는 영명)	학 명	사 용 부 위
녹각*	<i>Cervus nippon</i> T./ <i>Cervus elaphus</i> L./ <i>Cervus canadensis</i> E.	골질화된 뿔
녹용*	<i>Cervus nippon</i> T./ <i>Cervus elaphus</i> L./ <i>Cervus canadensis</i> E.	골질화되지 않았거나 약간 골질화된 어린뿔

\*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제3. 3. 1) (15) 중 “재제·가공소금”을 “재제·가공·정제소금”으로 한다.

제3. 3. 2) (26) ⑥ 중 “총질소 및 아미노산질소의”를 “총질소의”로 한다.

제3. 6. 13) 중 “가압가열멸균한”을 “가압가열살균 또는 멸균한”으로 한다.

제4. 12. 12-2 및 12-3의 4)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비타민 B<sub>6</sub>

제7. 일반시험법 11. 미량성분시험법 2) 비타민류 (9) 비타민 B<sub>6</sub>(피리독신 염산염) 또는 (10) 비타민의 미생물학적 분석법 ② 비타민 B<sub>6</sub>에 따라 시험한다.

제4. 12. 12-2 4) (12), (13), (14), (16), (17)중의 “(9) 비타민의 미생물학적분석법”을 각각 “(10) 비타민의 미생물학적분석법”으로 한다.

제4. 12. 12-3 4) (12), (13), (14), (16)중의 “(9) 비타민의 미생물학적분석법”을 각각 “(10) 비타민의 미생물학적분석법”으로 한다.

제4. 12. 12-6 4)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비타민 B<sub>6</sub>

제7. 일반시험법 11. 미량성분시험법 2) 비타민류 (9) 비타민 B<sub>6</sub>(피리독신 염산염) 또는 (10) 비타민의 미생물학적 분석법 ② 비타민 B<sub>6</sub>에 따라 시험한다.

제4. 12. 12-6 4) (11), (12), (13), (18), (19)중의 “(9) 비타민의 미생물학적분석법”을 각각 “(10) 비타민의 미생물학적분석법”으로 한다.

제4. 20. 20-15 “재제·가공소금”을 “재제·가공·정제소금”으로, 1) 중 “재제·가공소금”을 “재제·가공·정제소금”으로, “채처리하거나 가공하여”를



“재처리하거나 가공 또는 해수를 정제·결정화하여”로 하고, 2)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제소금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 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3) 규격

항 목	유 형	정제소금
(1) 염화나트륨(%)		95 이상
(2) 총염소(%)		58 이상
(3) 수분(%)		4.0 이하
(4) 불용분(%)		0.02 이하
(5) 황산이온(%)		0.4 이하
(6) 사분(%)		
(7) 비소(mg/kg)		0.5 이하
(8) 납(mg/kg)		2.0 이하
(9) 카드뮴(mg/kg)		0.5 이하
(10) 수은(mg/kg)		0.1 이하

제7, 8, 16) ② ㉠ 중 “배양하고 어느 배지에서든 균의 증식”을 “배양하고 세균의 증식”으로 한다.

(시행일 : 2002. 11. 29)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식약청고시 제2002-66호, 2002. 12. 5)

가. 94종 농약의 농산물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함.

나. 신규 기준설정 55종 농약의 시험법을 신설함.

다. 유의 아플라톡신 M1 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함.

(시행일 : 2003. 4.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식약청 고시 제2002-68호, 2002. 12. 11)

-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1.총칙을 개정함.
  - 나. 식품첨가물공전 제3.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을 개정함.
  - 다. 식품첨가물공전 제4.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화학적합성품중 404.규산칼슘, 405.소르빈산칼슘, 406.메틸에틸셀룰로오스, 407.폴리비닐피로리돈, 및 나.천연첨가물중 186.미리스트산 및 187.올레인산을 신규지정함.
  - 라. 식품첨가물공전 제4.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화학적합성품중 54.메타인산나트륨, 97.산성피로인산나트륨, 201.인산, 209.제삼인산나트륨, 210.제삼인산칼륨, 211.제삼인산칼슘, 212.제이인산나트륨, 213.제이인산암모늄, 214.제이인산칼륨, 215.제이인산칼슘, 216.제일인산나트륨, 217.제일인산암모늄, 218.제일인산칼륨, 219.제일인산칼슘, 309.피로인산나트륨, 310.피로인산칼륨 및 370.제삼인산마그네슘의 성분규격을 개정하고, 46.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73.부틸히드록시아니솔, 153.안식향산, 154.안식향산나트륨, 161.에스테르검, 274.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277.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302.프로피온산나트륨, 306.프로피온산칼슘, 376.프로피온산, 388.안식향산칼륨, 389.안식향산칼슘 및 392.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 마. 식품첨가물공전 제4.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천연첨가물중 20.리파아제 및 127.D-리보오스 성분규격을 개정하고 2.감초추출물 및 75.탈크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시행일 : 2002. 12. 11)
- 식품첨가물공전 제3.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㉔항은 2003년 3월 10일까지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식약청 고시 제2002-70호, 2002. 12. 16)

- 가. 재질규격중 합성수지재 재질규격에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cyclohexane-1,4-dimethylene terephthalate) : PCT)를 추가함
- 나. 재질규격중 합성수지재 재질규격에 에틸렌비닐알콜(ethylenevinylalcohol : EVOH)를 추가함  
(시행일 : 2002. 12. 16)

## 농림부

## 축산물의 표시기준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1 - 10호, 2002. 1. 4)

- 1) “성분”정의에 영양소뿐만 아니라 비영양소도 포함
- 2) “영양소기준치” 신설
  -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중 해당 축산물이 차지하는 영양적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제품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섭취 기준량을 말한다.
- 3) “주표시면”개념 도입
  - 용기·포장의 표시면중 제품명 등이 인쇄되어 소비자가 축산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 4)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 5) “인쇄가용 면적” 개념 삭제
- 6) 수입축산물의 표시사항을 별도로 규정
  - 가.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영양표시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표기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수출국 및 제조회사의 표시는 한글표시 스티커에 당해제품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 다.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을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표시 스티커에 12포인트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라. 수입축산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① 지육
    - ② 대포장(벌크상태의 것)(원료용인 경우에 한한다)
    - ③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 다만, 원래의 용기·포장 또는 라벨에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④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은 국내공급시 영업장명, 소재지와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 7) “제조연월일” 포장이 완료된 때 즉시 표시
  - 8) 유통기한 표시방법 추가 확대
  - 9) 영양성분의 표시대상 확대 신설
  - 10) 열량,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및 콜레스테롤 등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방법 등을 명확히 함.
  - 11) 방사선조사 축산물 표시 신설
  - 12) “천연” 표시 신설
    - “천연”의 표시는 인공(조합)향·합성착색료·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제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 13) “100%” 표시 신설
    - “100%”의 표시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이상이면 제품내에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14) “무가당”의 강조표시 신설
    - “무가당” 강조표시는 제조·가공과정중에 당을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가당 표시옆에 괄호로 제품내에 함유된 당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15) “무가염”의 강조표시 신설
    - “무가염” 강조표시는 제조·가공과정중에 염화나트륨을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내에 함유된 염화나트륨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16) 식육가공품의 유형중 “본인햄·본레스햄·로인햄·솔더햄·안심햄·피크닉햄” 등 추가 확대
  - 17) 유지방을 감하여 표준화한 경우 “표준화제품”, “표준화우유” 또는 “스텐다디 제이션” 등 표시사항 신설
  - 18) 유가공품의 유형중 “가공연유” 추가 확대
  - 19) (사)한국인영양학회에서 정한 ‘한국인 1일권장량연령’ 신설(표 1)
  - 20) 영양성분을 표시할 경우 ‘영양소기준치’ 신설(표 2)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28일까지는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중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2- 3호, 2002. 6. 15)

- 가. 축산물 원료등의 구비요건에 축산물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되는 원료알 의 요건 신설함.
- 나. 축산물의 일반가공기준에 멸균제품은 멸균한 용기 또는 포장에 무균공정 으로 충전·포장하여야 하는 사항 신설함.
- 다. 우유류, 저지방 우유류의 정의에 비타민, 무기질을 무균적으로 첨가할 수 있게함.
- 라. 가공유류(가공유, 저지방가공유)에 멸균 또는 살균처리후 식품 또는 식품 첨가 물 등을 무균적으로 첨가할 수 있게함.
- 마. 멸균제품의 세균수 가온저장 실험시 저장온도를 37℃에서 30℃로 낮춤.
- 바. 유청류에 유청단백분말 유형 신설.
- 사. 조제유류에 기타조제분유 및 기타조제우유 유형 신설.
- 아. 아미노산질소 및 비타민 간이검사법을 신설하고 기타 시험법 등 보완.  
(시행일 2002. 6. 15)

축산물의표시기준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2-5호, 2002. 6. 26)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본 제품은 냉장 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7월1일부터 시행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7674호, 2002. 7. 13)

농산물품질인증기준중 등급기준 상향조정, 지리적표시 등록기준중 등급기준 삭제, 원산지미표시 과태료부과 금액상정기준을 “적발물량\*판매업소 판매가격”으로 개정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도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시행일 2002. 7. 15)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농림부령 제1421호, 2002. 7. 22)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7674호, 2002. 7. 13)으로 농산물명예  
감시원의 위촉 등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과 농산  
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특산물 및 전통식품의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표  
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시행일 2002. 7. 22)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개정  
(농림부령 제1424호, 2002. 8. 5)

- 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축산기술연구소 등과 축산물위생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등을 검역원장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  
격·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등을 포함하는 검사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위생검사 기관의 지정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
- 다. 가공·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에 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식용란의 검사기준을 정함.
- 라. 도축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차위반시에는 영업  
정지 1월, 2차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월, 3차위반시에는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  
분을 하도록 하는 등 도축업자 및 축산물가공업자가 자체위생 관리기준 또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  
준을 정함. (시행일 2002. 8. 5)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중개정  
(농림부 고시 제2002-43호, 2002. 9. 17)

양념육,분쇄육가공품,저지방우유류 및 아이스크림류를 HACCP 적용대상품목으로  
신규 추가(시행일 2002. 9. 17)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요령중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2-7호, 2002. 11. 22)

제1조중 “제28조제3항”을 “제27조제1항·2항, 제28조제4항, 제2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를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4호중 “광역시 및 충청남도는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충청북도”를 “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에서 제4호를 삭제한다.

②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제1항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라 하고, 동항중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청인이 제2조제1항제4호 규정외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인 때에는 각각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중 “제8조”를 “제5조”로 하고, 동항중 “기관 또는 단체”를 “법인·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제4조로 하고, 동조중 “별지 제4호”를 “별지 제1호”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제5조로 하고, 동조 중 “검사기관이”를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의한 검사기관에 대하여”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5조제1항”을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으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동호중 “제7조”를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으로 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동호중 “검사성적의 내용”을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로 한다.

제9조를 제6조로 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검사능력의 관리 등) ① 검역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검사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기관에 출입하여 축산물검사업무와 관련한 시설·서류 또는 검사상황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역원장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검사정확도 등 검사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정

도관리(Blind test)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평가결과 연속 2회이상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7조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을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으로 하고, 동호중 “검사업무개시일 등”을 “검사기관지정일”로 하며, 동항제2호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검사기관의 명칭·변경된 소재지”를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검사대상축산물·검사항목의 지정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사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7조”를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8조”를 “제5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에서 제1호나목중 “농림부장관”을 “검역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동 서식중 “기관·단체명”을 “검사기관명”으로 하고, “제6조”를 “제4조”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한다.

(시행일 : 2002. 11. 22)

**해양수산부**

수출을목적으로하는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해양수산부고시 제2002-22호, 2002. 3. 14)

해양수산부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수출을목적으로하는수산물·수산가공품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제정·고시하였다.

이 고시는 2002. 3. 14부터 시행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중정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02-22-1호, 2002. 3. 21)

해양수산부는 2002년 3월14일(관보 제15048호)에 게재된 해양수산부고시 제2002-22호(수출을목적으로하는수산물·수산가공품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였다.

○ 정정사항

관련조문	오	정	비 고
[별표2]	9.위생관리항목(5~12)--	9.위생관리항목(1~8)--	p.16.우23행

1. HACCP이행상황조사  
· 점검표의 위생관리기준  
(공통)에 관한 사항란

수산물 · 수산특산물및수산전통식품의품질인증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관한고시  
(해양수산부고시제2002-91호, 2002.11.19)

제2조의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별표1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중 수산특산물의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조미취치포, 조미개량조개, 다시마환, 다시마과립

② 별표1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중 수산전통식품의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젓갈류 : 오징어, 명란, 창란, 조개, 꼴뚜기, 까나리, 어리굴, 소라, 곤쟁이, 멸치, 대구아가미, 명태아가미, 토하, 자리, 새우, 오분자기, 뱀뎡이, 자하, 가리비젓, 청어알젓, 우렁쉥이(멍게)젓  
2. 죽류 : 북어, 대구, 전복, 홍합, 대합, 굴  
3. 계장류 : 꽃게, 민꽃게, 참게  
4. 견제품 : 굴비, 마른가다미역  
5. 기타 : 조미김, 고추장굴비, 채첩국, 양념장어, 부각류(해조류)

“[별표2 ] 수산특산물품질인증 품목별품질기준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 ]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 품목별품질기준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환경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  
(환경부령 제122호, 2002. 6.21)

- 가. 먹는물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여 초과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시설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 나. 총대장균군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대장균과 분원성대장균군을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으로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다.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에서 최근 10년간 정량한계 이상 검출되지 아니한 말라티온을 삭제하고,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을 수질기준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유해영향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항목을 조정함.
- 라. 잔류염소의 농도상한선을 규정하여 소독부산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할로아세틱에시드 등 소독부산물질 5종을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으로 추가함.
- 마. 바이러스·지아디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미생물이 수돗물 중에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수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을 수질기준에 추가함.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중개정  
(환경부고시 제2002-91호, 2002. 6. 22)

- 가. 시료의 종류별로 채취시 주의사항을 규정하고, 미생물의 성장특성에 따라 보존기간을 합리화 함.
- 나. 지표미생물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새로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된 분원성 대장균군(Fecal Coliforms)과 대장균(E.coli)에 대한 검사방법을 신설함.
- 다. 총대장균군에 대한 기존의 시험방법 중 시험관법과 막여과법을 보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효소발색법을 신규방법으로 추가함.
- 라. 수질기준으로 신규 지정된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6개 항목에 대한 검사 방법을 신설함.

## 기업의 자율환경관리협약제 고시

환경부는 기업, 단체와정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유대를 통한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지역환경보전과 기업경영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을 제정·고시(’02.9.1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7808호, 2002. 12. 18)

플라스틱의 원료인 합성수지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제품에 한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제품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생산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하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음식료품, 화장품 등을 포장하는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으로 정하고, 생산자가 당해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하여야 하는 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과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하지 아니한 양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활용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정하는 등 생산자재활용의무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또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용기를 반환하는자에게 돌려주는 빈용기보증금을 제품값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제품을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청량음료로 정했다.